

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('26.7.1. 시행)

❖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

□ 지원 요건

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

-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
-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*을 20일 연속**으로 허용하여야 함

*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(휴일 등)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('19.6.14. 행정해석 변경)

** '20일 연속 허용'이란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기간을 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한 경우를 의미

②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(5명 이하)

-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정*하여야 함

* 다만, 육아기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(또는 장려금)의 대상 근로자를 업무분담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↳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지원금, 워라밸일자리장려금, 대체인력지원금 등

-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야 함

- 1명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다수의 동료 근로자가 분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,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1명당 분담근로자 5명까지 지정 가능

③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

-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

□ 지원 내용

-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

-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

구 분	피보험자수	최대 지급액
배우자 출산휴가	30인 미만	60만원
	30인 이상	40만원

-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- 동일한 업무분담자를 동일 기간 내 2명 이상의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없음(지원 제외)

□ 신청 및 지급 방식

- (신청방법)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
- (신청기간)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
- (제출서류) ①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, ②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

□ 적용례

- '26.7.1.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